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안)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28.

파 주 시 장



□ 사업내역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규모
파주시 동패동 1409 (운정3지구 A49블럭)	30,830,0000㎡	5,635,9838㎡	67,690,0138㎡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1층~지상15층

□ 안전점검비용(정기안전점검 33회, 초기점검 1회) : 금93,990,403원 (VAT포함)

□ 접수기간 : 2022. 11. 28.(월) 09:00 ~ 2022. 12. 5.(월) 18:00

※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파주시 주택과에 직접 접수하여야 함.

□ 수행기관 참가자격 및 지정 방법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파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함.
- 2)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후 우선(예비)순위자 별로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로 정함.

□ 제출서류

-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등(실적, 평가결과, 가격제안서, 서약서) 1부.

※ 가격제안서는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봉투에 회사명을 명기하여 제출 바랍니다.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자료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등록명부 : ‘붙임1’ 참조

☐ 주요공정계획 : ‘붙임4’ 참조

☐ 붙임 자료

- 1) 파주시『안전점검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및 등록명부 1부.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1부.
-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등 서식 1부.
- 4) 사업개요서 및 공정계획서 1부(별첨). 끝.

[붙임1] 파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30																																		
- 책임기술인		5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해당 분야) 수행실적(건수) <table><tr><td>구분</td><td>14건 이상</td><td>12건 이상</td><td>10건 이상</td><td>8건 이상</td><td>8건 미만</td></tr><tr><td>점수</td><td>5</td><td>4.5</td><td>4</td><td>3.5</td><td>3</td></tr></table>						구분	14건 이상	12건 이상	10건 이상	8건 이상	8건 미만	점수	5	4.5	4	3.5	3																
구분	14건 이상	12건 이상	10건 이상	8건 이상	8건 미만																															
점수	5	4.5	4	3.5	3																															
- 보유기술인		25	• 평가점수가 25점을 초과하는 경우 25점으로 하고, 25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에 한함(중복 불인정) <table><tr><td>구분</td><td>특급기술자</td><td>고급기술자</td><td>중급기술자</td><td>초급기술자</td></tr><tr><td>점수</td><td>3 X 인원</td><td>2 X 인원</td><td>1 X 인원</td><td>0.5 X 인원</td></tr></table>						구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수	3 X 인원	2 X 인원	1 X 인원	0.5 X 인원																		
구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수	3 X 인원	2 X 인원	1 X 인원	0.5 X 인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 건축공사장		2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실적당 2점																																	
- 건축물		10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실적당 1점																																	
다. 점검·진단 평가결과		10																																		
- 시정·부실처분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라. 신용도		10																																		
- 재정상태 건실도		10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table><tr><td>점수</td><td>회사채</td><td>기업어음</td><td>기업신용</td></tr><tr><td>10</td><td>A- 이상</td><td>A2- 이상</td><td>A- 이상</td></tr><tr><td>8</td><td>BBB- 이상</td><td>A3- 이상</td><td>BBB- 이상</td></tr><tr><td>6</td><td>BB- 이상</td><td>B0 이상</td><td>BB- 이상</td></tr><tr><td>4</td><td>B- 이상</td><td>B- 이상</td><td>B- 이상</td></tr><tr><td>2</td><td>CCC+ 이하</td><td>C 이하</td><td>CCC+ 이하</td></tr><tr><td>0</td><td colspan="3">미제출</td></tr></table>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10	A- 이상	A2- 이상	A- 이상	8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6	BB- 이상	B0 이상	BB- 이상	4	B- 이상	B- 이상	B- 이상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	미제출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10	A- 이상	A2- 이상	A- 이상																																	
8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6	BB- 이상	B0 이상	BB- 이상																																	
4	B- 이상	B- 이상	B- 이상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	미제출																																			

세부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무중첩도	20						
- 1개월 이상 잔여과업	20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4건 미만	4건 이상~ 6건 미만	6건 이상~ 8건 미만	8건 이상~ 10건 미만	10건 이상
		점수	20	18	16	14	12
사업수행능력 배점 합계	100						

2. 수행가격 평가

세부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 제안가격의 적정성	100						
- 제안평균 가격 대비 제안가격	100	$\text{평가점수} = 100 \times \left\{ 1 - 2 \times \left(\frac{\text{제안가격}}{\text{제안평균가격}} - \frac{95}{100} \right) \right\}$ •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업체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3. 최종평가

평가항목	평가배점
수행능력	4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40%)
수행가격	60점 (수행가격평가점수×60%)
합 계	100점

4. 일반사항

- 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파주시의 의견에 따른다.
- 다.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 바. 수행기관 지정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제안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기관으로 지정하며, 동점인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 1) 제안가격이 낮은 수행기관
 - 2) 발주청 추천
- 사. 참여기술인이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파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연번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분야
1	경기-제336호	길구조안전진단㈜	경기도 성남시	건축
2	경기-제323호	더피플스산업안전㈜	경기도 고양시	건축
3	경기-제191호	시스템안전㈜	경기도 부천시	건축
4	경기-제217호	엘림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건축
5	경기-제335호	제일건설안전기술㈜	경기도 고양시	건축, 토목
6	경기-제282호	㈜다스구조엔지니어링	경기도 하남시	건축
7	경기-제111호	㈜대한이앤씨	경기도 성남시	종합
8	경기-제123호	주식회사지오이앤씨	경기도 안양시	건축
9	경기-제284호	㈜에이툼엔지니어링	경기도 하남시	건축
10	경기-제239호	㈜제이더블유이앤씨	경기도 안양시	건축
11	경기-제316호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	경기도 수원시	건축
12	경기-제80호	한국재해예방관리원㈜	경기도 안산시	건축
13	경기-제332호	현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건축
14	경기-제293호	㈜신영에스씨엠	경기도 김포시	건축
15	경기-제157호	한세이앤씨㈜	경기도 성남시	종합
16	경기-제125호	경인엔지니어링㈜	경기도 하남시	건축
17	경기-제308호	디앤이엔지니어링주식회사	경기도 광명시	건축
18	경기-제331호	상현구조이앤씨㈜	경기도 성남시	건축
19	경기-제154호	㈜건우이앤씨	경기도 안양시	건축

20	경기-제231호	(주)건축사사무소광장	경기도 용인시	건축
21	경기-제204호	(주)구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건축
22	경기-제257호	(주)나래구조기술사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건축
23	경기-제176호	(주)셀 파코퍼레이션	경기도 수원시	건축
24	경기-제272호	(주)광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건축
25	경기-제306호	주식회사에스솔루션	경기도 하남시	건축
26	경기-제199호	(주)원피씨엔지니어링	경기도 용인시	건축
27	경기-제27호	(주)정우구조엔지니어링	경기도 안양시	건축

※ 등록명부 관리기간 : 2021. 12. 14 ~ 2022. 12. 13.

2021. 12. 21.

파 주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업명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휴 대 폰
	대표자	생년월일
직무분야	건축분야 [] 종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붙임1] 3.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붙임2] 4. 점검·진단 평가결과 1부 [붙임3] 5. 업무 중첩도 1부 [붙임4] 6.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붙임5] 7. 서약서 1부 [붙임6]	수수료 없음
----------------------	---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입찰자	상호(법인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 표 자		E-mail	

세부평가 항목	배점	자기평가	산출근거	비고
가. 참여기술인	30			
- 책임기술인	5			
- 보유기술인	25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 건축공사장	20			
- 건축물	10			
다. 점검·진단 평가결과	10			
- 시정·부실 처분	10			
라. 신용도	10			
- 재정상태 건실도	10			
마. 업무중첩도	20			
- 1개월 이상 잔여과업	20			
총계	100			

※ 파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연번	영역명	준공금액 (천원)	당해용역 금액(천원)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주처	비고
합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2.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하도급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처 확인 실적을 첨부한다.

점검·진단 평가결과 (최근 1년)

용역업체 (대표자)	용역명	조치기관명	부실내용		비고
			별점	사유	

※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업무 중첩도

(현재 진행 중인 용역사업)

연번	용역명	발주처	사업기간 (년.월.일.~ 년.월.일.)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간 (년.월.일.~ 년.월.일.)	잔여기간 (일)	비고
합계							

1.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적용되어 현재 수행 중인 용역사업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용역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건수에 관계없이 업무 중복도 평가 점수는 0점 처리함. (6개월 이상 중지 중인 용역의 경우 중지 공문 첨부)
3. 현재 수행 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 업 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포함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서 약 서

□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파주시장 귀하